제23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(2019. 6. 19.)에서 의결된 **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을** 이에 공포한다.

2019년 6월 19일

화순군의회의장 강 순 필

화순군의회규칙 제 39 호

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

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4조로 하고,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하부조직) ① 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 밑에 의정팀과 의사팀을 두고 각 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한다.

② 의정팀장과 의사팀장은 사무과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・감독하며, 의회 운영 제반사항을 처리한다.

제3조(종전의 제2조) 제2항제6호 및 제7호 중 “본회”를 각각 “정례회”로 하며,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, 제4조(종전의 제3조)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.

제4조(종전의 제3조)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각종 회의록 작성・보관・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화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<신 설>	제2조(하부조직) ① 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 밑에 의정팀과 의사팀을 두고 각 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한다. ② 의정팀장과 의사팀장은 사무과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하며, 의회 운영 제반 사항을 처리한다.
제2조(사무과장) ① (생 략)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 1. ~ 5. (생 략) 6.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.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. (생 략)	제3조(사무과장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정례회 ---------- 7. 정례회 ---------- 8. (현행과 같음)

9. 각종회의록 작성, 보관,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	<삭 제>
10. ~ 13. (생 략)	9. ~ 12. (현행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)
14. (생 략)	13. (현행 제14호와 같음)
제3조(전문위원)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.	제4조(전문위원)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.
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	② ---------- 각 호-------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6. 각종 회의록 작성· 보관·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
6. (생 략)	7. (현행 제6호와 같음)